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48

발의연월일: 2020. 7. 17.

발 의 자: 안민석・유정주・전용기

송갑석 · 이형석 · 문진석

조오섭 · 박홍근 · 김승원

서동용・양경숙・도종확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 선수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 내 고질적인 문제인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런데 선수들이 가혹행위를 견뎌야만 했던 원인 중 하나로 소속 팀이 우월적인 지위를 가진 상태에서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서가 꼽히 고 있어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형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·보급하도록 하고, 이를 사용하는 경우 재정 지원 등의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8조의9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의2에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9(표준계약서의 보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 하여야 한다.
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경기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	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일부개정법률 <u><신 설></u>	제18조의9(표준계약서의 보급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경기단 체와 소속 선수가 대등한 입장 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경기단체와 선수 간 계약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개 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.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국민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등 경기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에
	있어 우대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
	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
	광부렁으로 정한다.